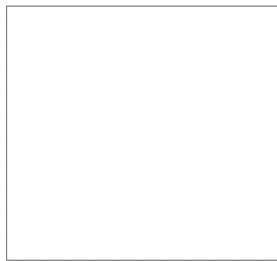


등록번호	도시재정비과-13256
등록일자	2015. 12. 17.
결재일자	2015. 12. 17.
공개구분	비공개(5)

주무관	재개발팀장	도시재정비과장	환경도시국장
협 조			

홍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종후재산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



서 대 문 구
 도시재정비과

홍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

홍제동 270번지일대 홍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2011.6.13.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라 종후재산 감정평가를 재실시하고자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선정 의뢰가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의 비용예치와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계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□ 사업개요

- 사업 명칭 : 홍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시행 위치 : 서대문구 홍제동 270번지 일대
- 시행 면적 : 58,367.4㎡
- 시 행 자 : 홍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: 정정숙)
- 정비계획
 - 토지이용계획
 - 대 지 면 적 : 46,192.4㎡
 - 기반시설 면적 : 10,015㎡
 - 건축계획
 - 건축면적 : 10,153.5㎡(건폐율 21.98%)
 - 연 면 적 : 183,275.26㎡(용적율 232.57%)
 - 주택규모 : 지하3층, 지상20층 아파트 1,085세대(임대 1920세대 포함)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

추진경위

- 2009.06.07 : 정비구역 지정
- 2010.04.07 : 조합설립인가
- 2011.06.13 : 사업시행인가
- 2013.09.25 : 정비계획변경
- 2015.07.08 : 사업시행변경인가

관련법 규정 및 방침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8조 제5항
- 구청장방침(감정평가업자 선정·추천업무 개선방안) 재무과-2160호(2015.1.30)

종후재산 감정평가 재평가 사유

- 2011.6.13. 사업시행변경인가 : 분양예정 대지 및 건축계획 변경

감정평가법인 선정 업체

순위	법인명	소재지	대표자	연락처	비고
9	(주)중앙감정 평가법인	서초구 서초중앙로 63 (리더스빌딩)	이대창	☎ 598-9500 fax 598-9600	순위명부 순번에 의거선정
13	한국감정원 (중부지사)	중구 남대문로 117 (동아빌딩)	박철형	☎ 735-7141 fax 738-2030	추정 감정평가금액 100억원 이상시 당연기관으로 선정

계약 추진 절차

- 선정된 감정평가업체 및 홍제3구역 조합에 선정 통보
- 선정된 감정평가기관 2개 업체로부터 견적서 징구
- 사업시행자에게 용역비 현금예치 통보
- 비용예치 완료시 감정평가 2개업체와의 계약체결 재무과 의뢰

○ 예치방법

- 재무과에서 발행한 세입세출현금납부서 또는 세입세출외 현금 가상계좌에 입금

○ 지출시기

-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보고서 및 준공계 제출시

○ 지출방법

- 재무과에 『세입세출외 현금 인출』의뢰(예치날자, 건명표기)
- 사업시행자 잔액 정산 : 지출금액 및 지출사유 등 표기
- ※ 잔액 발생시 예치에 따른 이자발생 포함 반환

따로붙임 :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약정서 1 부. 끝.